

## 「호적법(제 2 장-제 3 장)」

- 국 가 · 지 역: 일본
- 법 률 번 호: 소화22<1947>년 법률 제224호
- 공 포 일: 1947년 12월 22일
- 개 정 일: 2019년 5월 31일

원문	번역문
<p>第二章 戸籍簿</p> <p>第六条 戸籍は、市町村の区域内に本籍を定める一の夫婦及びこれと氏を同じくする子ごとに、これを編製する。ただし、日本人でない者（以下「外国人」という。）と婚姻をした者又は配偶者がいない者について新たに戸籍を編製するときは、その者及びこれと氏を同じくする子ごとに、これを編製する。</p> <p>第七条 戸籍は、これをつづつて帳簿とする。</p>	<p>제2장 호적부</p> <p>제6조 ① 호적은 시정촌 구역 내에 본적을 정하는 하나의 부부 및 이와 성(姓)을 같이 하는 자녀마다 작성한다. 다만, 일본인이 아닌 자(이하 “외국인”이라 한다)와 혼인한 자 또는 배우자가 없는 자에 대하여 새로이 호적을 작성할 때에는 그 자 및 그와 성을 같이 하는 자녀마다 작성한다.</p> <p>제7조 호적은 제본하여 장부로 만든다.</p>

**第八条**

戸籍は、正本と副本を設ける。

○2 正本は、これを市役所又は町村役場に備え、副本は、管轄法務局若しくは地方法務局又はその支局がこれを保存する。

**第九条**

戸籍は、その筆頭に記載した者の氏名及び本籍でこれを表示する。その者が戸籍から除かれた後も、同様である。

**第十条**

戸籍に記載されている者（その戸籍から除かれた者（その者に係る全部の記載が市町村長の過誤によつてされたものであつて、当該記載が第二十四条第二項の規定によつて訂正された場合におけるその者を除く。）を含む。）又はその配偶者、直系尊属若しくは直系卑属は、その戸籍の謄本若しくは抄本又は戸籍に記載した事項に関する証明書（以下「戸籍謄本等」という。）の交付の請求をすることができる。

○2 市町村長は、前項の請求が不当な目的によることが明らかなきときは、これを拒むことができる。

○3 第一項の請求をしようとする者は、郵便その他の法務省令

**제8조**

① 호적은 정본과 부본을 작성한다.

② 정본은 시청 또는 정촌(町村) 사무소에 두고, 부본은 관할 법무국이나 지방법무국 또는 그 지국이 보관한다.

**제9조**

호적은 필두에 기재한 자의 성명 및 본적으로 표시한다. 그 자가 호적에서 제외된 후에도 같다.

**제10조**

① 호적에 기재된 자[그 호적에서 제외된 자(그 자와 관련된 모든 기재가 시정촌장의 과오로 인한 것으로서 그 기재가 제24조제2항에 따라 정정된 경우의 그 자를 제외한다)를 포함한다] 또는 그 배우자,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은 그 호적의 등본이나 초본 또는 호적에 기재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이하 "호적등본등"이라 한다)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시정촌장은 제1항의 청구가 부당한 목적에 의한 것임이 분명할 때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청구를 하려는 자는 우편, 그 밖의 법무성령으로

で定める方法により、戸籍謄本等の送付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

第十条の二

前条第一項に規定する者以外の者は、次の各号に掲げる場合に限り、戸籍謄本等の交付の請求を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当該請求をする者は、それぞれ当該各号に定める事項を明らかにしてこれ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自己の権利を行使し、又は自己の義務を履行するために戸籍の記載事項を確認する必要がある場合 権利又は義務の発生原因及び内容並びに当該権利を行使し、又は当該義務を履行するために戸籍の記載事項の確認を必要とする理由
- 二 国又は地方公共団体の機関に提出する必要がある場合 戸籍謄本等を提出すべき国又は地方公共団体の機関及び当該機関への提出を必要とする理由
- 三 前二号に掲げる場合のほか、戸籍の記載事項を利用する正当な理由がある場合 戸籍の記載事項の利用の目的及び

정하는 방법으로 호적등본 등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의2

①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 이외의 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호적등본 등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해당 청구를 하는 자는 각각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 1.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호적의 기재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권리 또는 의무의 발생 원인 및 내용, 해당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호적의 기재사항의 확인을 필요로 하는 이유
- 2.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 기관에 제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호적등본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 기관 및 해당 기관에 대한 제출을 필요로 하는 이유
-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외에 호적의 기재사항을 이용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호적의 기재사항의 이용

<p>方法並びにその利用を必要とする事由</p> <p>○2 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国又は地方公共団体の機関は、法令の定める事務を遂行するために必要がある場合には、戸籍謄本等の交付の請求を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当該請求の任に当たる権限を有する職員は、その官職、当該事務の種類及び根拠となる法令の条項並びに戸籍の記載事項の利用の目的を明らかにしてこれをしてしなければならない。</p> <p>○3 第一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弁護士（弁護士法人を含む。次項において同じ。）、司法書士（司法書士法人を含む。次項において同じ。）、土地家屋調査士（土地家屋調査士法人を含む。次項において同じ。）、税理士（税理士法人を含む。次項において同じ。）、社会保険労務士（社会保険労務士法人を含む。次項において同じ。）、弁理士（特許業務法人を含む。次項において同じ。）、海事代理士又は行政書士（行政書士法人を含む。）は、受任している事件又は事務に関する業務を遂行するために必要がある場合には</p>	<p>목적 및 방법, 그 이용을 필요로 하는 사유</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 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호적등본 등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해당 청구를 처리할 권한을 가진 직원은 그 관직, 해당 사무의 종류 및 근거가 되는 법령 조항, 호적의 기재사항의 이용 목적을 분명히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변호사 법인을 포함한다. 제4항에서 같다), 사법서사<sup>1</sup>(사법서사 법인을 포함한다. 제4항에서 같다), 토지가옥조사사(토지가옥조사사 법인을 포함한다. 제4항에서 같다), 세무사(세무사 법인을 포함한다. 제4항에서 같다), 사회보험노무사(사회보험노무사 법인을 포함한다. 제4항에서 같다), 변리사(특허업무 법인을 포함한다. 제4항에서 같다), 해사대리사 또는 행정서사<sup>2</sup>(행정서사 법인을 포함한다)는 수임 중인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호적등본 등의</p>
----------------------------------------------------------------------------------------------------------------------------------------------------------------------------------------------------------------------------------------------------------------------------------------------------------------------------------------------------------------------------------------------------------------------------------------------------------------	----------------------------------------------------------------------------------------------------------------------------------------------------------------------------------------------------------------------------------------------------------------------------------------------------------------------------------------------------------------------------------------------------------------------------------------------------------------------------------------------------------------------------------------------------

<sup>1</sup> 우리나라의 법무사와 유사

<sup>2</sup> 우리나라의 행정사와 유사

、戸籍謄本等の交付の請求を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当該請求をする者は、その有する資格、当該業務の種類、当該事件又は事務の依頼者の氏名又は名称及び当該依頼者についての第一項各号に定める事項を明らかにしてこれ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4 第一項及び前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弁護士、司法書士、土地家屋調査士、税理士、社会保険労務士又は弁理士は、受任している事件について次に掲げる業務を遂行するために必要がある場合には、戸籍謄本等の交付の請求を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当該請求をする者は、その有する資格、当該事件の種類、その業務として代理し又は代理しようとする手続及び戸籍の記載事項の利用の目的を明らかにしてこれ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一 弁護士にあつては、裁判手続又は裁判外における民事上若しくは行政上の紛争処理の手続についての代理業務（弁護士法人については弁護士法（昭和二十四年法律第二百五号）第三十条の六第一項各号に規定する代理業務を除く。）

二 司法書士にあつては、司法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해당 청구를 하는 자는 그가 가진 자격, 그 업무의 종류, 해당 사건 또는 사무 의뢰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해당 의뢰인에 대한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분명히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사법서사, 토지가옥조사사, 세무사, 사회보험노무사 또는 변리사는 수입 중인 사건에 대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호적등본 등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청구인은 그가 보유한 자격, 해당 사건의 종류, 그 업무로서 대리하거나 대리하려는 절차 및 호적 기재사항의 이용 목적을 분명히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1. 변호사의 경우에는 재판절차 또는 재판 외의 민사상이나 행정상 분쟁처리절차에 대한 대리업무[변호사 법인에 대하여는 「변호사법」(소화24<1949>년 법률 제205호) 제30조의6제1항 각 호에 따른 대리업무를 제외한다]

2. 사법서사의 경우에는 「사

<p>書士法（昭和二十五年法律第百九十七号）第三条第一項第三号及び第六号から第八号までに規定する代理業務（同項第七号及び第八号に規定する相談業務並びに司法書士法人については同項第六号に規定する代理業務を除く。）</p> <p>三 土地家屋調査士にあつては、土地家屋調査士法（昭和二十五年法律第二百二十八号）第三条第一項第二号に規定する審査請求の手續についての代理業務並びに同項第四号及び第七号に規定する代理業務</p> <p>四 税理士にあつては、税理士法（昭和二十六年法律第二百三十七号）第二条第一項第一号に規定する不服申立て及びこれに関する主張又は陳述についての代理業務</p> <p>五 社会保険労務士にあつては、社会保険労務士法（昭和四十三年法律第八十九号）第二条第一項第一号の三に規定する審査請求及び再審査請求並びにこれらに係る行政機関等の調査又は処分に関し当該行政機関等に対してする主張又は陳述についての代理業務並びに同項第一号の四から第一</p>	<p>법서사법」(소화25&lt;1950&gt;년 법률 제197호)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6호에서 제8호까지에 따른 대리업무(같은 항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상담업무, 사법서사 법인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대리업무를 제외한다)</p> <p>3. 토지가옥조사사의 경우에는 「토지가옥조사사법」(소화25&lt;1950&gt;년 법률 제228호)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심사청구절차에 대한 대리업무, 같은 항 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대리업무</p> <p>4. 세무사의 경우에는 「세무사법」(소화26&lt;1951&gt;년 법률 제237호)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불복신청 및 이에 관한 주장 또는 진술에 대한 대리업무</p> <p>5. 사회보험노무사의 경우에는 「사회보험노무사법」(소화43&lt;1968&gt;년 법률 제89호) 제2조제1항제1호의3에 따른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이와 관련된 행정기관 등의 조사 또는 처분에 관하여 해당 행정기관 등에게 하는 주장 또는 진술에 대한 대리업무, 같은 항 제1호의4</p>
------------------------------------------------------------------------------------------------------------------------------------------------------------------------------------------------------------------------------------------------------------------------------------------------------------------------------------------------------------------------------------------------------------------------------------------------	-------------------------------------------------------------------------------------------------------------------------------------------------------------------------------------------------------------------------------------------------------------------------------------------------------------------------------------------------------------------------------------------------------------------------------------------------------------------------------------------------------------------------------------------

号の六までに規定する代理業務（同条第三項第一号に規定する相談業務を除く。）

六 弁理士にあつては、弁理士法（平成十二年法律第四十九号）第四条第一項に規定する特許庁における手続（不服申立てに限る。）、審査請求及び裁定に関する経済産業大臣に対する手続（裁定の取消しに限る。）についての代理業務、同条第二項第一号に規定する税関長又は財務大臣に対する手続（不服申立てに限る。）についての代理業務、同項第二号に規定する代理業務、同法第六条に規定する訴訟の手続についての代理業務並びに同法第六条の二第一項に規定する特定侵害訴訟の手続についての代理業務（特許業務法人については同法第六条に規定する訴訟の手続についての代理業務及び同法第六条の二第一項に規定する特定侵害訴訟の手続についての代理業務を除く。）

○ 5 第一項及び第三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弁護士は、刑事に関する事件における弁護人としての業務、少年の保護事件若し

부터 제1호의6까지에 따른 대리업무(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상담업무를 제외한다)

6. 변리사의 경우에는 「변리사법」(평성12<2000>년 법률 제49호) 제4조제1항에 따른 특허청의 절차(불복신청으로 한정한다), 심사청구 및 재정에 관한 경제산업대에 대한 절차(재정의 취소로 한정한다)에 대한 대리업무,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세관장 또는 재무대신에 대한 절차(불복신청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대리업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대리업무,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소송 절차에 대한 대리업무, 같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특정침해소송의 절차에 대한 대리업무(특허업무법인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소송 절차에 대한 대리업무 및 같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특정침해소송의 절차에 대한 대리업무를 제외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는 형사 사건의 변호인으로서의 업무, 소년의 보호 사건이나 「심신상실 등의 상태

くは心神喪失等の状態で重大な他害行為を行った者の医療及び観察等に関する法律（平成十五年法律第百十号）第三条に規定する処遇事件における付添人としての業務、逃亡犯罪人引渡審査請求事件における補佐人としての業務、人身保護法（昭和二十三年法律第百九十九号）第十四条第二項の規定により裁判所が選任した代理人としての業務、人事訴訟法（平成十五年法律第百九号）第十三条第二項及び第三項の規定により裁判長が選任した訴訟代理人としての業務又は民事訴訟法（平成八年法律第百九号）第三十五条第一項に規定する特別代理人としての業務を遂行するために必要がある場合には、戸籍謄本等の交付の請求を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当該請求をする者は、弁護士資格、これらの業務の別及び戸籍の記載事項の利用の目的を明らかにしてこれ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6 前条第三項の規定は、前各項の請求をしようとする者について準用する。

### 第十條之三

第十条第一項又は前条第一項から第五項までの請求をする場合において、現に請求の任に当たっている者は、市町村長に対し

로 중대한 타해행위를 한 자의 의료 및 관찰 등에 관한 법률」(평성15<2003>년 법률 제110호) 제3조에 따른 처우사건의 수행원으로서의 업무, 도망범죄인인도심사청구사건의 보좌인으로서의 업무, 「인신보호법」(소화23<1948>년 법률 제199호) 제14조제2항에 따라 재판소가 선임한 대리인으로서의 업무, 「인사소송법」(평성15<2003>년 법률 제109호)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재판장이 선임한 소송대리인으로서의 업무 또는 「민사소송법」(평성8<1996>년 법률 제109호) 제35조제1항에 따른 특별대리인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호적등본 등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청구를 하는 자는 변호사의 자격, 업무별 및 호적 기재사항의 이용 목적을 분명히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⑥ 제10조의2제3항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청구를 하려는 자에 대하여 준용한다.

### 제10조의3

① 제10조제1항 또는 제10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 실제로 청구를 담당하는 자는 시정촌장에게 운

、運転免許証を提示する方法その他の法務省令で定める方法により、当該請求の任に当たっている者を特定するために必要な氏名その他の法務省令で定める事項を明らか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前項の場合において、現に請求の任に当たっている者が、当該請求をする者（前条第二項の請求にあつては、当該請求の任に当たる権限を有する職員。以下この項及び次条において「請求者」という。）の代理人であるときその他請求者と異なる者であるときは、当該請求の任に当たっている者は、市町村長に対し、法務省令で定める方法により、請求者の依頼又は法令の規定により当該請求の任に当たるものであることを明らかにする書面を提供しなければならない。

#### 第十条の四

市町村長は、第十条の二第一項から第五項までの請求がされた場合において、これらの規定により請求者が明らか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事項が明らかにされていないと認めるときは、当該請求者に対し、必要な説明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

전면허증의 제시, 그 밖의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청구를 담당하는 자를 특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성명, 그 밖의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밝혀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실제로 청구를 담당하는 자는 청구를 하는 자(제10조의2제2항의 청구의 경우에는 해당 청구를 처리할 권한을 가진 직원. 이하 이항 및 제10조의4에서 “청구인”이라 한다)의 대리인인 때, 그 밖에 청구인이 아닌 자인 때에는 청구를 처리하는 자는 시정촌장에게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청구인의 의뢰 또는 법령에 따라 해당 청구를 처리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는 서면을 제공하여야 한다.

#### 제10조의4

시정촌장은 제10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이들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분명히 하여야 하는 사항이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청구인에게 필요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第十一条**

戸籍簿の全部又は一部が、滅失したとき、又は滅失のおそれがあるときは、法務大臣は、その再製又は補完について必要な処分を指示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滅失したものであるときは、その旨を告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十一条の二**

虚偽の届出等（届出、報告、申請、請求若しくは囑託、証書若しくは航海日誌の謄本又は裁判をいう。以下この項において同じ。）若しくは錯誤による届出等又は市町村長の過誤によつて記載がされ、かつ、その記載につき第二十四条第二項、第一百十三条、第一百十四条又は第一百六条の規定によつて訂正がされた戸籍について、当該戸籍に記載されている者（その戸籍から除かれた者を含む。次項において同じ。）から、当該訂正に係る事項の記載のない戸籍の再製の申出があつたときは、法務大臣は、その再製について必要な処分を指示する。ただし、再製によつて記載に錯誤又は遺漏がある戸籍となる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2 市町村長が記載をするに当たつて文字の訂正、追加又は削除をした戸籍について、当該戸

**제11조**

호적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실된 때 또는 상실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법무대신은 그 재작성 또는 보완에 대하여 필요한 처분을 지시한다. 이 경우에 상실된 것인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1조의2**

① 허위의 신고 등(신고, 보고, 신청, 청구나 촉탁, 증서나 항해일지의 등본 또는 재판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나 착오에 의한 신고 등 또는 시정촌장의 과오로 인하여 기재되고, 그 기재에 대하여 제24조 제2항, 제113조, 제114조 또는 제116조에 따라 정정된 호적에 대하여 그 호적에 기재된 자(그 호적에서 제외된 자를 포함한다. 제2항에서 같다)로부터 해당 정정과 관련된 사항의 기재가 없는 호적의 재작성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무대신은 그 재작성에 대하여 필요한 처분을 지시한다. 다만, 재작성으로 인하여 기재에 착오 또는 누락이 발생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정촌장이 기재하는 경우에 문자의 정정, 추가 또는 삭제를 한 호적에 대하여 해당 호적에

籍に記載されている者から、当該訂正、追加又は削除に係る事項の記載のない戸籍の再製の申出があつたときも、前項本文と同様とする。

### 第十二条

一 戸籍内の全員をその戸籍から除いたときは、その戸籍は、これを戸籍簿から除いて別につづり、除籍簿として、これを保存する。

○ 2 第九条、第十一条及び前条の規定は、除籍簿及び除かれた戸籍について準用する。

### 第十二条之二

第十条から第十条の四までの規定は、除かれた戸籍の謄本若しくは抄本又は除かれた戸籍に記載した事項に関する証明書(以下「除籍謄本等」という。)の交付の請求をする場合に準用する。

## 第三章 戸籍の記載

### 第十三条

戸籍には、本籍の外、戸籍内の各人について、左の事項を記載し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氏名
- 二 出生の年月日
- 三 戸籍に入った原因及び年月

기재된 자료부터 해당 정정, 추가 또는 삭제와 관련된 사항의 기재가 없는 호적의 재작성 신청이 있는 때에도 제1항 본문과 같다.

### 제12조

① 한 호적 내의 전원을 그 호적에서 삭제한 때에는 그 호적은 호적부에서 제외하여 별도로 제본하여 제적부로서 보관한다.

② 제9조, 제11조 및 제11조의 2는 제적부 및 제외된 호적에 대하여 준용한다.

### 제12조의2

제10조부터 제10조의4까지는 제외된 호적 등본이나 초본 또는 제외된 호적에 기재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이하 “제적등본 등”이라 한다)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 제3장 호적의 기재

### 제13조

호적에는 본적 외에 호적 내의 각 사람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성명
2. 출생연월일
3. 입적 원인 및 연월일

<p>日</p> <p>四 実父母の氏名及び実父母との続柄</p> <p>五 養子であるときは、養親の氏名及び養親との続柄</p> <p>六 夫婦については、夫又は妻である旨</p> <p>七 他の戸籍から入った者については、その戸籍の表示</p> <p>八 その他法務省令で定める事項</p> <p><b>第十四条</b></p> <p>氏名を記載するには、左の順序による。</p> <p>第一 夫婦が、夫の氏を称するときは夫、妻の氏を称するときは妻</p> <p>第二 配偶者</p> <p>第三 子</p> <p>○2 子の間では、出生の前後による。</p> <p>○3 戸籍を編製した後にその戸籍に入るべき原因が生じた者については、戸籍の末尾にこれを記載する。</p> <p><b>第十五条</b></p> <p>戸籍の記載は、届出、報告、申請、請求若しくは囑託、証書若しくは航海日誌の謄本又は裁判によつてこれをする。</p>	<p>4. 부모의 성명 및 부모와의 관계</p> <p>5. 양자인 때에는 양부모의 성명 및 양부모와의 관계</p> <p>6. 부부에 대하여는 남편 또는 아내의 표시</p> <p>7. 다른 호적에서 입적한 자에 대하여는 그 호적의 표시</p> <p>8. 그 밖에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사항</p> <p><b>제14조</b></p> <p>① 성명을 기재할 때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른다.</p> <p>제1. 부부가 남편의 성을 따를 때에는 남편, 부인의 성을 따를 때에는 부인</p> <p>제2. 배우자</p> <p>제3. 자녀</p> <p>② 자녀 간에는 출생 순서에 따른다.</p> <p>③ 호적을 작성한 후에 그 호적에 입적하여야 할 원인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호적의 끝을 이를 기재한다.</p> <p><b>제15조</b></p> <p>호적의 기재는 신고, 보고, 신청, 청구나 촉탁, 증서나 항해일지의 등본 또는 재판에 따른다.</p>
-----------------------------------------------------------------------------------------------------------------------------------------------------------------------------------------------------------------------------------------------------------------------------------------------------------------------------------------------------------------------------------------------------------------------------------	--------------------------------------------------------------------------------------------------------------------------------------------------------------------------------------------------------------------------------------------------------------------------------------------------------------------------------------------------------------------------------------------------------------------------------------------------------------------------------------

**第十六条**

婚姻の届出があつたときは、夫婦について新戸籍を編製する。但し、夫婦が、夫の氏を称する場合に夫、妻の氏を称する場合に妻が戸籍の筆頭に記載した者である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2 前項但書の場合には、夫の氏を称する妻は、夫の戸籍に入り、妻の氏を称する夫は、妻の戸籍に入る。

○3 日本人と外国人との婚姻の届出があつたときは、その日本人について新戸籍を編製する。ただし、その者が戸籍の筆頭に記載した者である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第十七条**

戸籍の筆頭に記載した者及びその配偶者以外の者がこれと同一の氏を称する子又は養子を有するに至つたときは、その者について新戸籍を編製する。

**第十八条**

父母の氏を称する子は、父母の戸籍に入る。

○2 前項の場合を除く外、父の氏を称する子は、父の戸籍に入り、母の氏を称する子は、母の戸籍に入る。

**제16조**

① 혼인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부부에 대하여 새로운 호적을 작성한다. 다만, 부부가 남편의 성을 따르는 경우에 남편, 부인의 성을 따르는 경우에 아내가 호적의 필두에 기재된 자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남편의 성을 따르는 부인은 남편의 호적에 입적하고, 부인의 성을 따르는 남편은 부인의 호적에 입적한다.

③ 일본인과 외국인의 혼인 신고가 있는 때에는 그 일본인에 대하여 새로운 호적을 작성한다. 다만, 그 자가 호적의 필두에 기재된 자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

호적의 필두에 기재된 자 및 그 배우자 이외의 자가 이와 동일한 성을 따르는 자녀 또는 양자를 양육하게 된 때에는 그 자에 대하여 새로운 호적을 작성한다.

**제18조**

① 부모의 성을 따르는 자녀는 부모의 호적에 입적한다.

② 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자녀는 아버지의 호적에, 어머니의 성을 따

○ 3 養子は、養親の戸籍に入る。

**第十九条**

婚姻又は養子縁組によつて氏を改めた者が、離婚、離縁又は婚姻若しくは縁組の取消によつて、婚姻又は縁組前の氏に復するときは、婚姻又は縁組前の戸籍に入る。但し、その戸籍が既に除かれているとき、又はその者が新戸籍編製の申出をしたときは、新戸籍を編製する。

○ 2 前項の規定は、民法第七百五十一条第一項の規定によつて婚姻前の氏に復する場合及び同法第七百九十一条第四項の規定によつて従前の氏に復する場合にこれを準用する。

○ 3 民法第七百六十七条第二項（同法第七百四十九条及び第七百七十一条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又は同法第八百十六条第二項（同法第八百八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よつて離婚若しくは婚姻の取消し又は離縁若しくは縁組の取消しの際に称していた氏を称する旨の届出があつた場合において、その届出をした者を筆頭に記載した戸籍が編製されていないとき、又はその者を筆頭に記載した戸籍に在る

르는 자녀는 어머니의 호적에 입적한다.

③ 양자는 양부모의 호적에 입적한다.

**제19조**

① 혼인 또는 양자 입양으로 성을 바꾼 자가 이혼, 파양 또는 혼인이나 입양의 취소로 혼인 또는 입양 전의 성으로 돌아갈 때에는 혼인 또는 입양 전 호적에 입적한다. 다만, 그 호적이 이미 삭제된 때 또는 그 자가 새로운 호적 작성을 신청한 때에는 새로운 호적을 작성한다.

② 제1항은 「민법」 제751조 제1항에 따라 혼인 전의 성으로 돌아가는 경우 및 같은 법 제791조제4항에 따라 종전의 성으로 돌아가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 「민법」 제767조제2항(같은 법 제749조 및 제77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816조제2항(같은 법 제80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이혼이나 혼인의 취소 또는 파양이나 입양의 취소 시에 따르던 성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 그 신고를 한 자를 필두로 기재한 호적이 작성되지 아니한 때 또는 그 자를 필두로 기재한 호적에 있는 자가 있는

者が他にあるときは、その届出をした者について新戸籍を編製する。

**第二十条**

前二条の規定によつて他の戸籍に入るべき者に配偶者があるときは、前二条の規定にかかわらず、その夫婦について新戸籍を編製する。

**第二十条の二**

第一百七条第二項又は第三項の規定によつて氏を変更する旨の届出があつた場合において、その届出をした者の戸籍に在る者が他にあるときは、その届出をした者について新戸籍を編製する。

○2 第一百七条第四項において準用する同条第一項の規定によつて氏を変更する旨の届出があつたときは、届出事件の本人について新戸籍を編製する。

**第二十条の三**

第六十八条の二の規定によつて縁組の届出があつたときは、まず養子について新戸籍を編製する。ただし、養子が養親の戸籍に在る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때에는 그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새로운 호적을 작성한다.

**제20조**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다른 호적에 입적하여야 할 자에게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제18조 및 제19조에도 불구하고 그 부부에 대하여 새로운 호적을 작성한다.

**제20조의2**

① 제10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성을 변경한다는 내용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 그 신고를 한 자의 호적에 있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새로운 호적을 작성한다.

② 제10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성을 변경한다는 내용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신고 사건의 본인에 대하여 새로운 호적을 작성한다.

**제20조의3**

① 제68조의2에 따라 양자 입양 신고가 있는 때에는 먼저 양자에 대하여 새로운 호적을 작성한다. 다만, 양자가 양부모의 호적에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2 第十四条第三項の規定は、前項ただし書の場合に準用する。

**第二十条の四**

性同一性障害者の性別の取扱いの特例に関する法律（平成十五年法律第百十一号）第三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性別の取扱いの変更の審判があつた場合において、当該性別の取扱いの変更の審判を受けた者の戸籍に記載されている者（その戸籍から除かれた者を含む。）が他にあるときは、当該性別の取扱いの変更の審判を受けた者について新戸籍を編製する。

**第二十一条**

成年に達した者は、分籍をすることができる。但し、戸籍の筆頭に記載した者及びその配偶者は、この限りでない。

○ 2 分籍の届出があつたときは、新戸籍を編製する。

**第二十二条**

父又は母の戸籍に入る者を除く外、戸籍に記載がない者についてあらたに戸籍の記載をすべきときは、新戸籍を編製する。

② 제14조제3항은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20조의4**

「성동일성장장애인의 성별 취급의 특례에 관한 법률」(평성 15<2003>년 법률 제111호) 제3조제1항에 따른 성별 변경 심판이 있는 경우에 해당 심판을 받은 자의 호적에 기재된 자(그 호적에서 제외된 자를 포함한다)가 있는 때에는 해당 심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새로운 호적을 작성한다.

**제21조**

① 성년이 된 자는 호적에서 분리할 수 있다. 다만, 호적의 필두에 기재된 자 및 그 배우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호적 분리 신고가 있는 때에는 새로운 호적을 작성한다.

**제22조**

부친 또는 모친의 호적에 입적하는 자를 제외하고 호적에 기재가 없는 자에 대하여 새로이 호적의 기재를 하여야 할 때에는 새로운 호적을 작성한다.

**第二十三条**

第十六条乃至第二十一条の規定によつて、新戸籍を編製され、又は他の戸籍に入る者は、従前の戸籍から除籍される。死亡し、失踪の宣告を受け、又は国籍を失つた者も、同様である。

**第二十四条**

戸籍の記載が法律上許されないものであること又はその記載に錯誤若しくは遺漏があることを発見した場合には、市町村長は、遅滞なく届出人又は届出事件の本人にその旨を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但し、その錯誤又は遺漏が市町村長の過誤によるものである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2 前項の通知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き、又は通知をしても戸籍訂正の申請をする者がいないときは、市町村長は、管轄法務局又は地方法務局の長の許可を得て、戸籍の訂正をすることができる。前項ただし書の場合も、同様である。

○3 裁判所その他の官庁、検察官又は吏員がその職務上戸籍の記載が法律上許されないものであること又はその記載に錯誤若しくは遺漏があることを知つたときは、遅滞なく届出事件の本人の本籍地の市町村長にその旨を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제23조**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에 따라 새로운 호적이 작성되거나 다른 호적에 입적하는 자는 종전의 호적에서 제적된다. 사망, 실종 선고 또는 국적을 상실한 자도 같다.

**제24조**

① 호적의 기재가 법률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시정촌장은 지체없이 신고인 또는 신고 사건의 본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착오 또는 누락이 시정촌장의 과오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통지를 할 수 없는 때 또는 통지를 하여도 호적정정의 신청인이 없는 때에는 시정촌장은 관할 법무국 또는 지방법무국의 장의 허가를 받아 호적 정정을 할 수 있다. 제1항 단서의 경우에도 같다.

③ 재판소, 그 밖의 관청, 검찰관 또는 관리가 그 직무상 호적의 기재가 법률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인 때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음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신고 사건의 본인의 본적지 시정촌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	--